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186
----------	------

발의연월일 : 2024. 12. 31

발 의 자 : 김예지 · 김선교 · 최수진
이인선 · 박덕흠 · 서미화
정성국 · 김형동 · 주호영
김도읍 · 김남희 · 장종태
임종득 · 정동영 · 박은정
이학영 · 이종욱 · 김태선
김성원 · 김준형 · 박정하
한창민 · 최보운 · 남인순
전종덕 · 안태준 · 이종배
박희승 · 이용선 · 이달희
김원이 · 최형두 · 윤종오
김대식 · 소병훈 · 김성희
김소희 · 김위상 · 신성범
임미애 · 이성권 · 용혜인
김상욱 · 유용원 · 고민정
송석준 · 조배숙 의원
(47인)

주 문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UN 사회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노

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사회권의 내용을 규정한 대표적인 국제 인권협약이며,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이하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UN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3자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UN 사회권 규약」을 서명하였지만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비준은 유보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여 「UN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UN 사회권 규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 주거권, 제36조 모성보호의 권리 및 보건권 등의 사회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며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UN 사회권 규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3자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임.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UN 사회권 규약」에 비준한 이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개인 및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3자가 「UN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침해를 국내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UN 사회권 규약」을 형식적인 선언으로 만들고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 제도가 확충되기는 했지만, 국내 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빈곤률과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용, 교육, 주거 등 주요 사회권 영역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이 권리구제를 모색

하는 방법에는 입법청원을 하거나 행정기관에 호소하는 등 방식이 있으나 다수자 집단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에게는 이 또한 힘에 부치는 일임.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지만, 사법심사에 있어 국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완화된 비례심사 기준을 채택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임.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1990년 유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전 국가기관이 사회권에 있어 적극적인 권리보장과 권리구제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 또한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UN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